

인도의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박 원 석*

<목 차>

- I. 머리말
- II. 인도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산업정책
 - 1. 외국인투자현황
 - 2. 산업정책
- III. 인도의 외국인투자관련정책
 - 1. 외국인투자절차
 - 2. 지적재산권보호
- IV. 투자보호제도
 - 1. 인도의 회사설립
 - 2. 러시아연방헌법의 통치구조의 특색
 - 3. 외환관리 및 규제
 - 4. 수입대금 지불 및 회수
 - 5. 배당금 지불
 - 6. 로열티
 - 7. 세제와 세제우대제도
 - 8. 투자제한 및 투자장벽
- V. 결론

* 부산외국어대학교 법학부 교수.

I. 머리말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약10억2천만명)와 일곱 번째로 큰 3백29만 평방킬로미터의 국토(한반도의 15배)를 가진,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466불에 불과하고 국민의 26%가 절대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¹⁾

인도의 빈곤이 지금까지 장기간 지속된 원인들 중의 하나는 인도경제의 폐쇄성에 있다. 인도가 외국자본이나 기업의 투자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1947년 독립이후 인도는 자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까지 6개의 산업정책을 채택하여 왔다.²⁾ 그러나 1991년 이전의 5개 산업정책들은 자급자족적이고 독립적인 경제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즉, 외국자본이나 기업이 인도에 진출하더라도 인도의 이익에 부합하여야하고, 효율적으로 통제되어야만 했다. 예를 들어, 외국기업의 출자지분율은 40%까지만 허용되었고, 심지어 고유 브랜드의 사용도 금지되었다.³⁾

그러나 1991년에 채택된 산업정책은 주요우선산업(high priority industries)의 출자비율을 51%까지 확대하고, 첨단기술산업인 경우에는 100%까지 허용하고,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가 정부승인 없이 자동적으로 허용되게 하였다. 1991년 산업정책이후, 인도는 인프라개발, 산업화를 위한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확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재의 도입확대, IT분야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WTO규정에

-
- 1) 인도 통산부 산업정책촉진국 자료집, INVESTING IN INDIA-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y and Procedures*. (이하 인도통산부 자료집)
 - 2) Rhonda Bershok, *Releasing the Tiger? India Moves into the Global Market*, 4-Fall International Legal Perspective 53 (1992).
 - 3) 인도에 진출한 펩시, 혼다, 산요는 각각 Lehar 펩시, hero 혼다, BPL 산요와 같은 합성어를 사용해야만 했다. Bershok, 전제논문, 56면.

의한 시장개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91-2001년간에는 매년 6%경제 성장에 이어 2001/02년에는 5.6%, 그리고 2003-4년에는 8.2% GDP성장으로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2004년 현재 세계 제10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기간(2002-7) 중에 연 8%의 GDP 성장률을 목표로 인프라확충, FDI 유치증대, 수출 800억불 달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

이 논문은 먼저 인도의 외국인투자현황과 1991년에 채택된 산업정책의 주요특징들에 대해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외국인투자승인절차 및 그 승인기관, 제4장에서는 외국인투자보호제도를 분석한다.

II. 인도의 외국인투자 현황과 산업정책

1. 외국인투자현황

1991-2003년간 인도의 외국인투자 현황은 약 766억불이 승인(16,141건)되었으나 실제유입액은 약 42%에 해당하는 약327억에 불과하다. 동기간 중 국가별 FDI 승인액은 미국 160억불, 모리셔스 88억불, 영국 60억불, 일본 31억불, 한국 26억불, 독일 25억불이나, 실제로는 모리셔스 74억불, 미국 34억불, 일본 16억불, 영국 13억불, 네덜란드 11억불, 독일 10억불, 한국 6억불만이 유입되었다.⁵⁾

산업별 FDI는 정부승인기준으로 전력, 석유정제 등 에너지 27%, 통신 설비 19%, 컴퓨터 S/W 전자제품 등 전기장비 9.8%, 교통산업 7.4%, 서

4) KOTRA 홈페이지, 투자환경. 실질구매력평가기준(PPP)에서 인도는 미국 9.7조불, 중국 5조불, 일본 3.2조불에 이어 세계 제4위 (2.9조불)를 차지하고 있고, 21세기에 거대 신흥시장국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투자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상계서.

5) 인도투자지출안내서 (주인도대사관, 2003. 6.), 72-76면.

4 比較法學 (第 15 輯)

비스분야(금융 포함) 6.4%, 금속산업 5.4%, 화학제품(비료제외) 4.5%순으로 승인되었으나, 실제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전기장비 13.9%, 통신설비 13.1%, 교통산업 10.7%, 에너지(연료) 10.1% 순으로 투자되어 투자승인대비 실제 유입비율은 낮은 편이다.⁶⁾

인도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조는 수출입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지난 20년 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통해 3배 이상 수출증가를 달성하여 세계수출액 중 비중 4%로 증가된 반면, 인도는 1990년 초 경제개방 이후에도 내수시장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실적으로 저조와 수출증가를 둔화로 세계수출액 비중이 0.5%-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중반부터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진출하여 인도 내 외국인투자순위에서 승인액기준으로 26.3억불로 5위, 실제투자액기준으로 6.3억불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2. 산업정책

17세기 동인도회사의 진출이후 외국기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인도는 1947년 독립 이후에도 강력한 국내산업보호정책을 하여 국내기업을 보호하여 왔으나 이는 인도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1991년에 새로운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of 1991)을 채택하여 외국기업의 자본투자와 기술협력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다. 1991년 산업정책이 채택한 주요한 특징과 그 발전과정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 전기기기, 통신기기, 수송기계(승용차 제외), 산업용 기계, 농업용기계, 화학제품(비료제외), 도금산업, 보일러, 발전플랜트 등 대규모

6) 상계서.

7)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현황, [www.kotra.]

투자를 필요로 하는 34개 고도 우선산업의 경우에 외국자본 출자비율을 종전 40%에서 51%로 확대하였다.

둘째, 위의 고도우선산업에서 외국의 기술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술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10년 간 또는 생산을 개시된 날로부터 7년간 로열티 지불총액이 매출액의 8% 이하로서, 로열티가 1천만 루피 이하 또는 국내판매액의 4%이하 또는 수출액의 8% 이하의 경우에는 외국기업과의 기술협정은 자동적으로 인가되도록 하였다.

셋째, 외국인투자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인도준비은행의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특별 심의 및 추천 권한을 가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 FIPB)를 설립하였다.

넷째, 1993년 외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기업의 출자비율이 40% 이상인 회사에 부과한 엄격한 통제를 해제하였다.

여섯째, 1996년 외국인직접투자 자동승인을 받는 업종을 확대하고, 승인조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이전에는 35개 지정업종과 수출위주산업에 한해 51% 미만 외국인 지분 투자사업에 대해 인도준비은행이 자동승인해 주었지만 이러한 규정이 완화되었다.

일곱째, 합작회사의 경우 자본재의 수입은 외국기업의 출자액으로만 조달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술합작투자에 대한 자동승인 조건도 완화하였다.

여덟째, 1996년 기술사용료(로열티를 포함)가 일괄적으로 지불되는 경우 그 한도를 1,000만루피에서 2,000만루피로 인상하고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종목당 투자한도도 5%에서 10%로 확대하였다.

아홉째, 1998년 외자유치를 신속히 하기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투자안건의 인가에 있어서는 90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10억루피 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담당관을 지명하여 신청부터 사업착수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열 번째, 석탄, 갈탄, 석유제품 분야에 대한 라이선스제를 폐지하였다.

Ⅲ. 인도의 외국인투자관련정책

1. 외국인투자절차⁸⁾

1) 투자승인 및 감독기관

인도의 투자승인 및 감독기관으로는 업종, 투자비율 및 담당지역 등에 인도준비은행 (RBI), 산업부내 산업지원실 (SIA),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IPB), 외국인투자실시청(FIIA)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1) 인도준비은행(RBI)

인도준비은행은 인도의 중앙은행으로서 자동승인절차요건(automatic route)을 충족하는 모든 투자활동에 대해 투자를 허용할 권한을 가진다.⁹⁾ 인도준비은행은 오로지 투자제안서가 자동승인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는 인도준비은행의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투자제안에 대한 단일 심사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 상실 직속기구로서 설립되었다. 즉, 동 위원회는 34개 지정산업에 해당 되지 않는 분야에 정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프로젝트로서 투자금액이 60억 루피 이하인 외국인투자를 심사한다.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경제문제각교위원회(Cabinet Committee on

8) 인도에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독립된 법규는 없으며 수시로 발표되는 중앙정부의 각종 산업정책과 공업개발규제법 (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 IDRA), 회사법 (Company Act), 독과점금지법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 MRTP),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 등에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항이 분산되어 있다.

9)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투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제2절 참조.

Economic Affairs)의 추인을 받는다.¹⁰⁾

(3) 산업지원실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 SIA)

특별경제지역(EPZ, FTZ, STP, EHTP)외의 100% 수출위주기업 (EOU)과 중앙은행의 자동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다음의 외국인투자를 승인한다.

- 가. 외국인출자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
- 나. 외국인출자 지분이 51% 이상의 36개 고도우선업종에 대한 투자다. 36개 우선 산업에 해당되나 외자로 자본재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라. 영세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가 유보되어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제안.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807개 세부품목에 대해 최고 600만루피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출자 지분도 24%로 제한하고 있다.
- 마. 컨설팅, 금융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
- 바. 산업승인이 필요한 산업(석탄, 석유 및 석유제품, 설탕 등의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반드시 산업지원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외국인출자 지분도 49%로 제한됨)

이외에도 산업지원실은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IPB) 및 외국인투자 각료회의(CCFI)에서 심의한 외국인투자 안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투자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4) 외국인투자실시청(FIIA : Foreign Investment Implementation Authority)

외국인투자실시청은 99년도에 인도 상공부내에 설치되었다. 외국인투

10) Mark J. Ridley, *Leg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 in Structuring Business Transactions in India for the Conference Entitled: India Power*, 3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313, 328 (1995).

자실시청은 외국인투자가 인가된 날로부터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해외 투자자의 투자상담 창구 기능을 하고, 원만한 투자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IA의 조직은 상공부 차관을 의장으로 재무부 차관, 외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참여하여 안전마다 관계 부서와 주정부 수석차관이 참가하여 구성된다. 중앙정부 부서간과 중앙과 주정부 간의 연락 조정을 하며 외국투자가가 필요한 인가 취득 등을 지원한다. 또한 FIIA와 FIPB의 창구는 동일하며 인도 상공부내의 산업지원실(SIA : 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ce)이 수행하고 있다.

2. 투자승인방식

외국인직접투자는 거의 모든 품목과 업종에 허용되고 있고, 투자가 허용되는 대부분의 품목과 업종에 대한 투자승인은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에 위임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부승인은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¹¹⁾의 추천에 따라 부여된다.

투자승인방법에는 인도준비은행에 신고만 하면 승인이 허용되는 자동승인(네거티브방식)과 중앙정부(외국투자촉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부승인방식 두 개의 제도가 있다.

1) 자동승인제도(Automatic Route)

100%외국인직접투자는 거의 모든 품목과 업종에 개방되어있다. 자동승인절차(automatic route)에 따라 승인된다.

(1) 신규투자(New Ventures)

다음에 해당되는 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는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11)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는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의 산업정책촉진국(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과 재정부(Union Finance), 통상부 외 정부주요기관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받는다:

산업인가(Industrial License)가 요구되는 모든 제안. 산업인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1951년 산업개발및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에 따라 산업인가가 요구되는 품목; 영세기업에 배정된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에 24%이상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1991년에 발표된 新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지역정책에 따라 산업인가가 필요한 품목;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이미 인도업체와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합작 또는 협력투자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인도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제안;

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 투자제안을 하거나 최고투자금액을 초과한 제안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 또는 자동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투자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2) 기설립회사(existing company)

이미 설립된 회사도 자동승인절차에 의해 사전승인 없이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 기존설립회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확장프로그램(expansion programme)을 통해서이다. 추가요건은 첫째, 지분의 증가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취득이 없이 기존 기업의 지분확정으로부터 발생하여야하고, 둘째, 송금되는 자본은 외국환이며, 셋째, 추가된 지분에 의한 사업의 내용이 주로(predominantly)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받는 분야이어야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확대는 fipb를 통해 정부승인을 받아야한다. 지분증가를 통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인도당사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동의서 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기존 지분을 증가시키지 않고 기존회사가 자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자동승인절차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주로 관계되어야하고, 둘째,

지분의 증가가 지분의 기초증가로부터 발생하여야하며, 셋째, 지분의 매입은 외국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타사항

- 우선주로 할당된 주식은 할당일로부터 5년 동안 어떠한 방법으로도 양도될 수 없다는 요건은 현재 개정되어, 발기인이 공개입찰이나 특혜로 투입한 지분의 20%이하만이 양도가 정지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 FDI나 기술합작에 적용되는 자동승인절차는 인도에서 이미 동종 또는 동일업종에 합작이나 기술양여/상표계약을 체결한 또는 체결하고 있는 회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ADB, IFC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참여는 SEBI(인도증권거래소) 및 인도중앙은행의 규정과 부문별 F야 상한 규정에 따라 자동승인이 허용된다.

2) 정부승인(governmental approval)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해 정부승인이 필요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이루어진다. 정부승인을 요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산업인가(Industrial License)가 요구되는 모든 제안. 산업인가가 요구되는 경우는 1951년 산업개발및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Act)에 따라 산업인가가 요구되는 품목; 영세산업에 배정된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에 24%이상 자본투자를 하는 경우; 그리고 1991년에 발표된 新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지역정책에 따라 산업인가가 필요한 품목;

외국투자자가 이미 인도에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서 투자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투자자가 이미 설립된 인도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제안;

허용업종이 아닌 업종에 투자제안을 하거나 최고투자금액을 초과한 제안 또는 FDI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 또는 자동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투자신청을 제안하는 경우.

FDI에 개방되지 않는 모든 활동 및 업종 그리고 산업은 정부가 달리 결정하여 발표하지 않는 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정책상 변화는 산업 정책촉진국의 산업지원실(Secretary for Industrial Assistance)에 의해 발표된다.

인도준비은행은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에 따라 정부가 승인한 제안에 대해 허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투자승인을 취득한 인도기업은 투자금납입(inward remittance)이나 외국투자자에게 주식발행을 하는 경우 RBI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RBI의 지방 지점에 투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RBI의 지방지점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승인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가 외국인투자제안을 심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IV. 투자보호제도

인도는 1991년 이후 외국인투자의 촉진과 보증을 위해 여러 가지 투자보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 인도의 회사설립

외국인투자자는 1956년 회사법에 따라 합작회사(joint venture)나 외국인단독회사(wholly owned subsidiaries) 형태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¹²⁾ 회사형태는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의 3가지로 나뉘어 있다. 회사등록과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되면 해당 인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주식의 공모여하로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와 공개회사(public company)로 분류된다. 비공개회사는 10만루피 또는 법률에 정해진 그 이상의 최저자본금을 가진 회사로서 주식의 양도나 이사의 수에 제한을 받는 회사를 말한다. 공개회사는 발기인이 7명 이상으로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 회사등기 기관에 기본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영업허가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기본정관에는 회사명, 주소, 목적, 자본금, 설립문언, 발기인의 서명이 기재된다. 또, 부속정관(Articles of Association)에는 이사회규정, 주식양도 등의 회사 운영상의 사항을 기재한다.¹³⁾

외국인투자자는 법인설립이나 합작투자외에 필요한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인도에서 개설이 가능한 형태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또는 representative office),¹⁴⁾ 지사사무실(Branch Office),¹⁵⁾ 프로젝트 사

12) 인도통산부 자료집 제5장 외국투자자를 위한 회사설립 선택.

13) KOTRA 홈페이지, 투자절차.

14) 연락사무소의 업무는 시장조사 및 제품홍보 제공에 한정되고,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거래를 수행할 수 없어 일체의 소득을 창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는 주로 외국인과 인도인간의 수출입 기회나 협력사업 추진에 사용된다. 인도통산부자료집, 제5장.

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은 인도의외국환관리법(India's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의 적용을 받는다.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해 주고 있는데 처음 3년 동안 승인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기업등록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을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인도 기업법 594조에서 명시한 손익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KOTRA 홈페이지, 인도투자절차.

15) 해외에서 제조 및 무역을 하는 회사는 지사사무소의 설립이 허용된다. 지사사무소의 역할은 수출입 업무의 수행,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본사를 위한 조사활동,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협력 추진,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

무실 (Project office)¹⁶⁾ 3종류가 있다. 이런 형태의 사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인도중앙은행 (Reserve Bank of India, RBI)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인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등록청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해야 한다.

자동승인절차나 정부승인을 거쳐 외국인투자 받은 기설립회사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예정투자액의 우선적 할당을 제안할 수 있다. 위 회사는 주식발행가격을 해당일로부터 6개월 이전기간동안 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된 가격의 주별최고 종가액과 최저액의 평균가격으로 발행하거나 해당일 전 2주일 동안 주식거래소에서의 주별 최고 종가액과 최저가격의 평균가격으로 발행할 수 있다. 해당일은 주주총회가 개최된 날로부터 30일 전의 날이다.¹⁷⁾

소비재를 생산하는 22개 지정산업에 포함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주식배당금은 생산을 시작한 날로부터 7년 동안 벌어들인 수출액과 상응하여야 한다.

2. 지적재산권보호

인도는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과 일치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규는 저작권법(Copyright (Amendment) Act 1999), 상표법(Trade Marks Act 2000), 의장법(Design Act 2000), 지리

매 에이전트 활동,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사무소는 직접 제조행위를 수행할 수 없지만 인도인에게 하청을 줄 수는 있다. 지사의 설립 및 활동은 인도중앙은행(RBI Guidelines)에 의해 결정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중앙은행의 외국환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계서.

16) 외국인이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RBI의 승인을 받아 임시적으로 프로젝트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프로젝트 사무소는 기본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활동만이 허용되고, 그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상계서.

17) 인도통산부안내서, 제2장.

적 표시법(Geographical Indicator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2000), 식물 다양성 및 농민권리 보호법안(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Bill 1999), 반도체 집적회로 레이아웃 디자인법안(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 Bill 2000), 특허법(Patents (Second Amendment) Bill)이 있다.

저작권은 1999년 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기존의 25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되었고, 의장권은 2000년 개정으로 보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특허법이 개정되면 특허의 보호기간은 현재의 14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게 된다.¹⁸⁾

또한 인도에서는 식품, 화학품, 의약품에 대해서는 물질특허가 인정되지 않고 제법특허(製法特許, process patent)만이 7년 기간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제법특허에서 물질특허로의 이행에 10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음에 따라, 2005년 1월1일 이후는 물질특허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그 동안의 경과조치로 메일박스 제도와 배타적 판매권(EMR : Exclusive Marketing Right)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메일박스 제도는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특허 출원을 접수하여 법률 제정후 과거로 소급하여 특허신청 접수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배타적 판매권은 다른 WTO 가맹국에서 인정된 특허권을 인도 등 물질특허가 아직 인정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도에 있어서도 이 규정에 따라 메일박스 제도와 배타적판매권이 인정되고 있다.¹⁹⁾

3. 외환관리 및 규제

외국환은행은 실제 수요에 기초한 것에 대해서만 외화를 매각할 수 있다. 외화를 구입했지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화를

18) KOTRA 자료집, 인도투자절차.

19) 상계서.

다시 매각해야 한다. 다만 최근 인도의 외환보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외환규제는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수출대금 회수, 수입대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대금 회수 외화의 외화예금보유는 50%는 EEFC 구조에서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매각해야 한다.

4. 수입대금 지불 및 회수

수입대금 지불은 원칙적으로 선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대외상업차입(ECB : External Commercial Borrowing)으로 취급되어 인도 중앙은행(RBI)과 재무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의 선불은 직접 supplier에게 송금할 것과, 선불액이 25,0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은행보증을 취득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정된다.

수출대금 회수는 원칙적으로 선적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지불기일 중 빠른 쪽으로 회수되어야만 한다. 수출대금을 미리 받는 것은 금리가 LIBOR+100 basis point 이하이거나 금리 지불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수출로 취득한 외화의 50%는 EEFC(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 구조에 수출자가 보유할 수 있지만 나머지 50%는 매각할 의무가 있다. 단, 수출가공구(EPZ)내의 기업, 경제특구(SEZ)내의 기업 및 EOU(수출지향기업),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내의 기업, 일렉트로닉스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HTP)내의 기업은 70%까지의 보유가 인정되고 있다.²⁰⁾

5. 배당금 지불

배당금을 해외로 지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식품이나 자

20) 상계서.

동차, 가전 등 소비재 22개 업종에 대해서는 조업 후 7년간은 배당금 지불액을 수출액을 상한으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2000년 6월 이들 22개 업종에 대한 이 의화균형 규제는 철폐되었다.²¹⁾

6. 로열티

기술협력계약에서 로열티는 200만불까지 일괄 지불되는 경우, 국내판매액의 5%, 수출액의 8%까지 자동승인절차로 인정되지만, 10년 동안 총판매액의 8%를 초과할 수 없다. 100% 출자 외자인단독기업의 로열티는 모두 FIPB의 개별인가를 취득해야 했지만, 2000년 9월 이 규제는 철폐되었다. 기술양도없이 상표나 브랜드네임의 사용에 관한 로열티 지불은 수출액의 2%, 국내 판매액의 1%까지 자동인가로 인정된다. 이 때의 판매액은 에이전트비용, 수송비, 각종세금 등을 공제한 순판매액이다.²²⁾

7. 세제와 세제우대제도

인도의 세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지는데,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주요한 세금은 지방정부의 농업소득세를 제외하면 소득세, 관세, 소비세 및 판매세 등이고, 지방세에는 판매세, 우편세, 주소비세, 토지세, 직업세 등이다. 인도는 1991년 대폭적인 세제개편으로 관세와 소비세, 법인세 등이 하락하였다.

법인세율은 35%이지만 5%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36.75%.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40%이지만 5%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2%이다.²³⁾ 개인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0%, 10%, 20%, 30%가 부과된다.²⁴⁾ 서비스세는 컨설팅, 부동산, 조

21) 상계서.

22) 인도통산부자료집, 제4장.

23) 우리나라와 인도간에는 1985년 7월 '이중과세방지협정' 그리고 1996년 6월에는 '한-인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양국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사회사, 공인 회계사 등 특정 25개 업종에 대해서 5%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소비세(Excise duty)는 원칙적으로 16%로, 자동차등 일부 품목에서는 특별 소비세가 부가된다. 판매세는 주정부의 판매세(State Sales Tax)와 중앙정부 판매세(Central Sales Tax)의 두 종류가 있다. 주를 넘는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 판매세와 중앙정부 판매세 모두 부과되나, 주 내부의 거래일 경우에는 주정부의 판매세만이 부과된다. 중앙정부 판매세는 원칙적으로 4%이지만, 주 판매세의 세율은 주와 제품에 따라 각각 다르다. 주와 중앙정부에 부과되는 2종류가 있다. 관세는 기본관세(basic duty), 추가관세(additional duty), 특별추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일정한 산식에 의해 복리환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²⁵⁾

배당과세는 10%이나, 2%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10.2%이고, 로얄티 및 기술적 업무에 대한 원천과세율은 97년 6월 1일 이후의 계약일 경우는 20%, 그 이전일 경우는 30%가 부과된다.²⁶⁾

인도는 국내세제, 수출입 정책 등을 통해 수출촉진,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외자, 내자를 막론하고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전력, 고속도로, 교량, 도시 교통시스템, 수도,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10년간 법인세가 100%면제된다. 통신 분야에서는 최초 5년간은 법인세가 완전 면제되고, 그 후 5년간은 법인세의 30%가 면제된다.

특별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혜택이 주어진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내의 기업, 일렉트로닉스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HTP)내 기업, 수출가공구(EPZ)내의 기업 및 EOU(수출지향 기업)은 2009년도까지 법인세가 면제되고, 경제특구(SEZ)내의 기업은 5

24) 상계서.

25) KOTRA 홈페이지 인도투자절차; 인도통산부자료집 제10장.

26) 상계서.

년 동안 법인세가 면제되고, 그 후 2년간 추가로 50%감면된다. 한편 자본재, 부품, 원재료의 무세수입, 국내시장에서의 조달부품, 자본재에 대한 물품세 비과세 등이 인정된다. 또한,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수출촉진을 위한 자본수입 계획(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Scheme)이 적용되어, 일정기간 내에 수출의무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본재 수입에 대해 일률적으로 5%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8. 투자제한 및 투자장벽

1991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장벽을 대폭적으로 제거 또는 완화하였지만 인도는 여전히 많은 투자회피 요인을 가지고 있다. 먼저, 인도는 전통적으로 영세산업과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인도의 영세산업정책(small-scale policy)에 따르면, 영세산업에 대한 주식보유는 24%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투자대상회사가 영세산업 지위를 포기하면 외국인투자제한은 없다. 만약 영세산업에 유보된 품목을 제조하는 영세기업에 24%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품의 50% 이상을 수출하여야 한다.²⁷⁾ 무역을 위한 외국인투자는 자동승인절차를 통해서 최대 51%까지 승인될 수 있고, 그 이상은FIPB를 통해 정부의 승인을 취득하여야한다.

둘째, 1956년 회사법에 따르면, 인도의 회사는 설립형태에 따라 최저 자본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공개회사(private company)의 경우는 10만루피, 공개회사(public company)인 경우는 50만루피의 최저자본금이 필요하다. 또,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경우에는 자본금액이 3,000만루피(뭄바이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1억루피) 이상이며, 이 경우 25% 이상이 공모되어야 한다.²⁸⁾

27) 인도통산부자료집, 제1장.

28) KOTRA 자료집, 투자절차. 인도통산부자료집 제8장 (회사설립).

셋째, 비은행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국 직접투자가 인정되고 있으나 외자의 출자비율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제한되어 있다. 외자출자비율이 51% 이하인 경우는 50만 루피, 51% 초과 75%이하인 경우는 500만 루피, 75%초과는 5,000만 루피로 설정되어 있다.

넷째, 여러 경제특구에 설립된 기업은 수출의무(export performance)를 부담한다. 이는 투자기업에 가장 중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수출가공구역(EPZ, Export Processing Zone)내의 기업, 수출지향형 기업(EOU, Export Oriented Unit),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내 기업,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파크(STP)내기업, 일렉트로닉스 하드웨어 테크놀로지 파크(EHTP) 내 기업에게는 일정의 수출의무가 부과된다.²⁹⁾

V. 결론

인도는 지난 1991년부터 경제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폐쇄적 조치를 연차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어 근본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제도는 없으나 다만 업종에 따라 원자력에너지, 석탄, 부동산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직접 이들 업종에 투자하는 것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는 외국인투자인 방해하는 여러 장벽들을 유지하고 있다.

먼저, 인도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국내의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각 지방정부들은 정치적 성향이 상이함에 따라 각각 상이한 정책을 취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동등한 대우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인 정당들, 예컨대 VHP나 인도 공산당 등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

29) 인도통산부자료집 제9장.

다. 또한, 소프트음료, 감자칩등에 투자하려고 했던 펩시콜라 및 코카콜라의 투자에 대해 이들 정당들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내 투자에 애로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셋째, 토지제공 지연, 수행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넷째, 장기간의 법적 분쟁이다. 보통 법적소송은 5년 이상 걸린다.

<Abstract>

A Study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ystems in India

Won-Seog Park

Despite of the second largest population and the seventh largest territory in the world, India records only 466 dollars of GNP and 26% of its population are suffering below the absolute poverty line.

However, since the adoption of the new Industrial Policy in 1991, India's economy is in a process of fast development and is now ranked as the tenth most industrialized country in the world. The Industrial Policy of 1991 liberalized the laws regulating domestic industry and took measures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pproval for foreign investment is granted up to 51% foreign equity in high priority industries.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new Policy include: abolition of industrial licensing in all but sixteen industries; deregula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MRTP Act; no investment limit for large Indian /foreign companies; automatic approval for foreign investment up to 50 percent in the mining sector; opening up of the core and basic industries to the private sector, ; without prior approval, foreign investors can own 24% equity in any India firm; automatic permission by Reserve Bank of India for foreign technology agreement in high priority industries upto a lumpsum payment of Rs. 10 mill. 5% royalty for domestic sales and 8% for exports, etc.